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4.
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14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 내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본어투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조문 현행화 (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)

나. 일본어투 표현 “한한다” 및 띄어쓰기 정비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정비」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제2호(정의)에서는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이 일부개정된 바, 이를 반영하여

조문 내 세목 명을 정정함.

- 안 제3조제1항(선정)은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 조항이 제7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여 이를 적용해 조문 번호를 현행화함.
- 그 외로 「알기쉬운 법령정비」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제74조(정의)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된 바 이를 반영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」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체계의 통일성 및 정합성 유지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2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0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조례 내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본어투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)
- 나. 일본어투 표현 “한한다” 및 띄어쓰기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법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2. 29. ~ 2024. 3. 27. / 27일 간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재산분에 한한다”를 “사업소분에 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중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 제7조”를 “중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 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